## 감 사 보 고 서

##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재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배재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 함)

2020 년 4월 3일

학교법인 배 재 학 딩

감사 송 기 국 (인)

감사 황 영 선 (안)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배재대학교 총장

성명 김 선 재 (인) 7 세 2 시 2 시

#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학교법인 배재학당(법인일반업무회계)</u>의 <u>2019</u>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<u>2020년 2월 29일</u>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<u>학교법인 배재학당(법인일반업무회계)의</u>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<u>학교법인배재학당(법인일반업무회계)의 2020년 2월 29일</u>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0년 4월 9일

학교법인 배재학당

감사

감사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사무국장

성명